

【서면질문 및 답변】 - 제3차 본회의('98. 10. 23)

- 질문자 : 오종환 의원
- 답변자 : 총무과장

<질 문>

: 농성 제2 어린이공원 내 테니스장 2면과 쌍촌 제1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조성근거와 예산에 대하여?

<답 변>

- 조성근거와 예산은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6조,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지방체육관리지침(문화체육부)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기금 50%와 지방비 50%를 투입하여 조성.

시설내용으로는 농성동 417-8번지에 설치한 농성1동 테니스장은 1994년 12월 29일 면적 2,084㎡의 사유지에 간이운동시설(테니스장) 2면, 부대 편의시설 2종 3면, 체력단련시설 11종 15점, 부대편의시설 2종 7점 규모로 사업비 2,824만 5천원을 투입하여 동네체육시설 설치.

- 질문자 : 오종환 의원
- 답변자 : 사회복지과장

<질 문>

: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대한 콘테이너박스 와 쉼스 설치 조성 근거 및 예산에 대하여?

<답 변>

-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은 서창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조성 되었으며, 콘테이너박스 설치는 운동을 하기 위한 물품보관이었으나 탈의실 등으로 사용하자는 노인들의 요구가 있어 시설비 140만원을 투입, '97년 8월 완료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.

또한 게이트볼장 쉼스 설치는 게이트볼장의 주변 차도와 어린이놀이터 등이 연결되어 경기시 불타격으로 인한 사고유발이 염려된다는 동호인 추월명 외 11인으로부터 건의서가 서창동사무소에 전달되어 시설비 374만원을 투입, '98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음.